

정관 신구조문 대비표

개정 전	개정 후
제 1장 총칙 제 2조 【목적】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 ①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② 공학연구개발업 ③ 기술시험, 검사 및 분석업 ④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소매업 (2013년 3월 08일 개정) ⑤ 상품 종합 도소매업 (2013년 3월 08일 개정) ⑥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⑦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무역업 (2013년 3월 08일 개정) ⑧ 전자상거래업 (2013년 3월 08일 개정) ⑨ 제조업 (2017년 3월 30일 개정) ⑩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	(신설) 제 2조 【목적】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 ⑩ 의료기기 제조업 (2021년 10월 개정) ⑪ 의료기기 관련 무역업 및 수출입업 (2021년 10월 개정) ⑫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 (2021년 10월 개정) ⑬ 장애인 보조기기 제조 및 판매업 (2021년 10월 개정) ⑭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 일체